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5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지수(기소),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민성(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7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자작물이 복제 및 배포된 IP 주소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수사의뢰자는 '뮤토렌트'라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해당 저작물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각 해당 저작물 파일(조각)을 배포해주고 있는 IP 주소(3건)를 당시 접속시간 정보와 함께 화면 캡처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 ② 수사기관이 F인터넷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결과 위 시간 위 IP 접속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이고, 그 가입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한 사실,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 본인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피의자로 특정한 사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부인의 이유나 근거를 묻는 경찰의 신문에 대하여 대체로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주거지 내 PC에 연결된 IP의 동일 여부와 저작물 다운로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실시한 위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 PC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배우자 또는 아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단서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렌트 프로그램의 의미와 내용 등을 이해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_____
	판사	김배현	_____
	판사	정현서	_____